

【캄보디아 산업안전보건 관련 장관령(Prakas, 프라카스)】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 건설부

No: 32 Bro.S/S. N

건설 관리에 관한 공포(Prakas)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 건설부 장관

- 캄보디아 1993년 헌법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1198/72 , 1998년 11월 30일자 참조
- 토지 관리부 및 도시 계획 건설부 설립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699/09, 1999년 6월 2일자 참조
- 토지 관리부 및 도시 계획 건설부 설립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04/N.S/94, 1994년 8월 10일자 참조
- 토지 관리부 및 도시 계획 건설부 설립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62R.N.Kr/B.K, 1999년 7월 20일자 참조
- 공사허가서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86/62R.N.Kr/B.K 1997년 12월 19일자 참조
- 프놈펜 및 지방의 공공 질서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43 62R.N.Kr/B.K, 1994년 8월 10일자 참조
- 기업 및 시설 관리에 대한 공사 및 토목 계획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75 Br.K/D.N.S, 1999년 9월 2일자 참조
- 지방 토지 관리, 도시 계획, 건설 구조의 역할과 의무 및 지휘 하에 있는 부서의 역할 과 의무에 관한 시행령 76 Br.K/D.N.S, 1999년 9월 2일자 참조
- 현재 건설 상황에 따라

결 정

제1항: 이 Prakas는 건설 현장의 공공 질서와 안전 및 보안을 유지하고 건설의 품질 및 건설의 미학과 관련된 규정의 구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항: 건설 현장은 기업, 시설 또는 건설 하도급 업체가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 건설 부 또는 지방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 건설 부서에서 발급한 건설업 허가증을 가진 경우에만 건설현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각 건설현장은 운영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야만 운영 가능하다. 건설현장 운영 허가는 건설 허가를 받은 이후 적어도 1개월 이내에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부 또는 지방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 건설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 현장 운영 신청 서류:

- 1- 건설주의 신청서
- 2- 공사 허가서
- 3- 기업 및 시설 또는 하도급 업체와 건설주 계약서
- 4- 건설 공사 위임을 받은 기업 및 시설 또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 허가증

제4항: 각 건설현장은 아래와 같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사 기관이 건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현장 개통서, 공사 별 설계 도면, 공사 단계별 공사 실시 계획서, 관련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공사를 담당하는 공사 기술자가 있어야 하며 기술자가 감독관계자에게 정보 제공 및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사할 건물의 시공 명, 시공 업체, 시공 주, 건축가, 엔지니어, 시공 크기, 연락처 및 위치가 있는 건축배너를 게시해야 한다.
- 조명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소음, 연기, 먼지 및 기타 영향을 현장 주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과 시간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제5항: 각 건설현장은 최소 높이 2m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보도에 설치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좁은 공사 현장의 경우 공공 보도의 임시로 울타리 설치에 관한 당국이 허용하거나 설정되는 범위까지 보도 및 보호 장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높이가 5m 이상인 공사는 안전대를 설치하여 고무로 감싸고 그 주위를 안전망으로 둘러싸야 한다.

제6항: 건설현장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정돈이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건설주는 공공 도로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수도 및 운하로 흘러 들어가는 공사 자재 또는 폐기물의 축적으로 인한 질서와 위생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7항: 작업 사무실, 근로자 작업 장비 보관 창고, 기계 및 건설 활동은 현장 울타리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현장 난간대가 설치된 공공 질서와 보안을 보장하는 장소 또는 특정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8항: 크레인 차 장비를 사용해야 하거나 공공 도로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의 경우 건설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건축물 설치를 위해 도로를 차단하고 임시 통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당국의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 야간에는 안전과 공공 질서를 위해 폐쇄된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9항: 건설 시 기초 기둥을 설치할 경우 건설주와 건설 하도급 업체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공사 감독하는 기술자가 공사현장 내에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지하에 구성요소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 공사현장 주변 건물의 안전 확보해야 한다.
- 기술적인 양상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10항: 건설주와 하도급 업체는 헬멧, 장갑, 신발, 안전 벨트 및 기타 보호 장비와 같은 안전 장비를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1항: 공사가 완공되면 건설주가 공사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고 공사현장 폐쇄 문

서를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부 또는 지방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 건설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 공사현장 폐쇄 신청 서류:

- 1- 건설주의 신청서
- 2- 공사현장 운영 허가서
- 3- 공사 과정에 대한 보고서

제12항: 공사현장 폐쇄 문서를 수령한 후 건설주는 개업하기 전에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부 또는 지방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 건설 부서에 건축 진위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제13항: 공사현장이 완공되면 건설주는 현장 울타리를 해체하고 폐기물을 깨끗하게 운반해야 한다.

제14항: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공사현장의 경우 관할 당국은 공사현장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충고를 따르지 않고 건설주가 계속 공사하는 경우 관할 당국은 건설 자재를 몰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한다.

※ 제4항, 제7항, 제9항, 제10 항, 제11 항 및 제12 항의 사항을 위반한 공사현장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공사주에게 불량 조건 보완을 지시하거나 허용된 설계 계획이나 도시 계획에서 벗어난 사항에 대한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15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은 후 시정이 없는 경우 관할 당국은 공사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설주일 경우 관할 당국은 모든 건설 자재를 해체하거나 압수하고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한다.

※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규정된 규정을 위반하는 공사현장에 대해 관할 당국은 벌금을 부과하고 건설주에게 공공질서 명령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해야 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건설주일 경우 관할 당국은 건설 자재를 압수해야 한다.

제15항: 본 Prakas의 제 14항에 1절 및 2 절에 명시된 바 일시적으로 중단된 공사현장은 당국이 지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 공사장 재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주의 신청서
- 2- 전 공사장 운영허가서
- 3- 공사장 중단 문서
- 4- 불량 조건 충족 증명서

제16항: 건설주와 하도급 업체주는 캄보디아 왕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7항: 총리실장, 모든 총무부 국장, 지방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 건설부서 및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 건설 도, 구의 군수는 서명한 날부터 이 Prakas를 이행해야 한다.

프놈펜, 2001년 3월 20일
장관

수령 기관:

- 총리실
- 모든 부처 및 기관
- 모든 시청 및 지방 부서
- 제17항과 동일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No: 052 S.K.B.Y

프놈펜, 2000년 02월 10일

화장실 설치에 관한 공포(Prakas)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장관

- 캄보디아 왕실의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1198/72, 1998년 11월 30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7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699/06, 1999년 6월 17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87 R.N.Kr/B.K , 1999년 10월 4일자 참조

결 정

제1항: 노동법 조항에 명시된 기업 및 시설의 고용주는 근로자가 구내에서 적절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제2항: 화장실 수는 근로자 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한다.

근로자 수 (남자 또는 여자)	화장실 수
1명 ~ 15명	1

16명 ~ 35명	2
36명 ~ 55명	3
56명 ~ 80명	4
81명 ~ 110명	5
111명 ~ 150명	6
151명 ~ 1000명	50명 기준에서 1개 추가
1000명 이상	70명 기준에서 1개 추가

제3항: 화장실 설치 시 아래와 같이 준수해야 한다:

- 바닥과 벽은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 문이 잘 닫혀 있어야 하며 내부에서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벽은 밝은 색깔로 칠해져야 한다.
- 빛이 잘 들어와야 한다.
- 비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연결된 지붕이 있어야 한다.
-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비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제4항: 위생 규칙에 따라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이 배수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5항: 여성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양변기를 설치하고 여성 50명 기준에서 추가해야 한다.

제6항: 화장실에 사용되는 물은 충분하고 깨끗하며 맑아야 한다. 각 화장실에 비누도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화장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청소해야 한다.

제7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8항: 이 Prakas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장관

서명 및 도장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No: 053 S.K.B.Y

프놈펜, 2000년 2월 10일

작업에서의 의자에 관한 공포 (Prakas)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장관

- 캄보디아 왕실의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1198-72, 1998년 11월 30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699/06, 1999년 6월 17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87 R.N.Kr/B.K , 1999년 10월 4일자 참조

결 정

제1항: 노동법 제1조에 명시된 기업 및 시설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의자를 설치해야 한다.

제2항: 어떤 경우(작업에 앉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주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적절한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

제3항: 기업 및 시설의 내부 규칙에는 의자 사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제4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5항 이 Prakas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ITH SAMHENG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장관협의회의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모든 지방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및 캄보디아 상업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No: 054 S.K.B.Y

프놈펜, 2000년 2월 10일

위생 음료 제공에 관한 공포(Prakas)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장관

- 캄보디아 왕실의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1198-72, 1998년 11월 30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699/06, 1999년 6월 17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87 R.N.Kr/B.K , 1999년 10월 4일자 참조

결 정

제1항: 노동법 제1조에 명시된 기업 및 시설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충분한 위생적인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항: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음료는 잘 닫히는 뚜껑이 있는 통에 담겨야 하며 밑에서 배수할 수 있는 배수구를 위생 음료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제3항: 위생 음료 용기는 작업장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내부 규정에 음료 용기의 위치, 음료 제공 방법 또는 청결과 정리정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해야 한다.

제4항: 고용주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물컵 또는 기타 위생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제5항: 알코올성 있는 음료는 근무시간에 직장에 반입하거나 근로자에게 제공 할 수 없다.

제6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 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7항: 이 Prakas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ITH SAMHENG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장관협의회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모든 지방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및 캄보디아 상업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노동직업훈련부

No: 075/11 K.B/Br.K

프놈펜 2001년 3월 30일

공사 현장에서의 위생에 관한 공포(Prakas)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 캄보디아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0908/1055, 2008 년 9 월 25 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02/N.S/94, 1994년 7월 20 일자 참조
- 노동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설립에 관한 법령을 사용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105/003, 2005 년 01 월 17 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실행 및 기능 입안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52 R.N.Kr/B.K , 2005 년 04 월 01 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의 필요에 의거함

결 정

제 1 항: (목표)

이 Prakas 는 다음을 목표로 정한다:

- 노동법에 따라 건설 현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
- 건설 현장을 근로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제 2 항: (주요 용어 정의)

- 고용주는 소유자, 최고 경영자, 이사, 업체 위임자, 기업의 하도급(노동 계약자), 건설 기업, 건설 회사 및 건설 현장 감독자를 의미합니다.
- 위임자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업, 건설 시설 또는 건설 회사의 소유자,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로부터 공식적인 (구두 포함) 권리 양도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하도급(노동 계약자)은 기업, 건설 시설 또는 건설 회사의 소유자,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로부터 첫 번째로 계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제 3 항: (화장실, 욕실 및 깨끗한 물)

건설 현장에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건설 현장에서는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현장 근처에서 화장실과 욕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근로자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등을 몸을 씻을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적절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제 4 항: (지정한 위치에 있는 건설 현장 또는 이동식 건설 현장)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정한 위치에 있는 건설 현장 또는 이동식 건설 현장의 경우 고용주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충분한 위생 음료
- 일상에 필요한 정도의 충분하고 깨끗한 물
- 더위나 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숙소
- 적절한 화장실 및 욕실

제 5 항: (다중 기업 건설 현장)

- 건설 현장에 여러 기업 또는 여러 하도급 업체주의 개입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제 3 항 및 제 4 항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찾기 위해 협의할 수 있다.
- 물, 숙소, 화장실 제공 책임자
- 위의 제공 사항을 적절하게 확인하는 책임자

제 6 항: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위의 제 5 항에 명시된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고용주는 이 prakas 의 제 3 항과 제 4 항을 각자 개인이 준수해야한다.

제7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 8 항: 이 Praka 의 규정에 반대되는 모든 Prakas 의 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9 항: 이 Prakas 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Vong Sauth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쑥 안 부총리실
- 상임 영자부총리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부 기관
- 행정 및 재무 총무부 기관
- 지방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및 캄보디아 상업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노동직업훈련부

No: 076/11 K.B/Br.K

프놈펜, 2011년 3월 30일

기후변화로 인한 건설현장에서의 위험 조치에 관한 공포(Prakas)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 캄보디아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0908/1055, 2008 년 9 월 25 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02/N.S/94, 1994년 7월 20일 자 참조
- 노동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설립에 관한 법령을 사용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105/003, 2005 년 01 월 17 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실행 및 기능 입안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52 R.NKr/B.K, 2005 년 04 월 01 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의 필요에 의거함

결 정

제 1 항: (목표)

이 Prakas 는 다음을 목표로 정한다:

- 노동법에 따라 건설 기업주, 건설 기업, 또는 건설 회사 및 건설 현장이 적절한 책임을 질 수 있다.
-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적이고 적절한 휴식을 가질 수 있다.

제 2 항: (주요 용어 정의)

- 고용주는 소유자, 최고 경영자, 이사, 업체 위임자, 기업의 하도급(노동 계약자), 건설 기업, 건설 회사 및 건설 현장 감독자를 의미합니다.
- 위임자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업, 건설 시설 또는 건설 회사의 소유자,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로부터 공식적인 (구두 포함) 권리 양도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하도급(노동 계약자)은 기업, 건설 시설 또는 건설 회사의 소유자,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로부터 첫 번째로 계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 대형 크레인 차: 대형 크레인 차는 다양한 기계 장비를 크레인으로 인양할 수 있고 회전할 수 있는 크고 높은 크레인 차를 말합니다.

제 3 항: (현장 밖에 작업)

근로자가 그늘이 없는 건설 현장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매일 근무 일에 11:30 분부터 13:00 분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백한 이유가 있는 비정상적인 긴급한 경우, 고용주는 위에 첫 번째 절에 명시된 바 휴식을 수시로 중지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휴식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노동 감독관 또는 노동 의료감독관의 조사를 위해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 4 항: (현장 밖에 작업 시 폭우나 강풍이 있을 때)

건설 현장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폭우나 강풍이 있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휴식을 취해야 한다:

- 땅을 파거나 삽질 작업을 할 때
- 형판을 작업할 때
- 조립 작업할 때
- 지붕이나 높은 곳(추락위험을 보호하는 장비가 있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등

제 5 항: (비정상적인 긴급한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비정상적인 긴급한 경우 제 4 항에 명시된 바 근로자의 휴식을 중지할 수 있다:

- 1 시간 미만 마지막 시간에 작업을 마무리할 때
- 1 시간 미만 콘크리트 작업을 마무리할 때
- 위에 첫 번째 절에 명시된 바 휴식을 중지한 경우 고용주는 휴식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노동 감독관 또는 노동 의료감독관의 조사를 위해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 6 항: (대형 크레인 차 작업 시)

건설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차를 작업할 때 고용주는 기상예보 부서에 연락하여 바람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무거운 물건을 인양하거나 대형 크레인 차 작동 시 위험을 피해야 한다.

제7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 8 항: 이 Praka 의 규정에 반대되는 모든 Prakas 의 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9 항: 이 Prakas 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Vong Sauth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썩 안 부총리실
- 상임 영자부총리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부 기관
- 행정 및 재무 총무부 기관
- 지방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및 캄보디아 상업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노동직업훈련부

No: **077**/11 K.B/Br.K

프놈펜, 200..년 3월 30일

공사장에서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공포(Prakas)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 캄보디아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0704/124, 2004 년 07 월 15 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02/N.S/94, 1994년 7월 20 일자 참조
- 노동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설립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105/003, 2005 년 01 월 17 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실행 및 기능 입안에 관한 시행령 52 R.N.Kr/B.K , 2005 년 04 월 01 일자참조
- 노동직업훈련부의 필요에 의거함

결 정

제 1 항: (목표)

이 Prakas 는 다음을 목표로 정한다:

- 근로 감독관 및 노동 전담의사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공사장은 노동법에 관한 적절한 사유로 책임을 질 수 있다.
- 공사현장에 대한 게시판을 만들 수 있다.

제2항: (주요 용어 정의)

- 고용주는 소유자, 최고 경영자, 이사, 업체 위임자, 기업의 하도급(노동 계약자), 건설 기업, 건설 회사 및 건설 현장 감독자를 의미합니다.
- 위임자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업, 건설 시설 또는 건설 회사의 소유자,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로부터 공식적인 (구두 포함) 권리 양도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하도급(노동 계약자)은 기업, 건설 시설 또는 건설 회사의 소유자,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로부터 첫 번째로 계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 게시판은 공사현장 내에서 주요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칠판, 철판으로 만든 판,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을 의미한다.

제 3 항: (공사장 개장 공지)

토지 관리 및 도시 계획 건설부로부터 공사 허가서를 받은 후 고용주는 최소한 처음 공사현장을개장한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노동부에 공사현장 개장을 공지해야 한다. 해당 고용주는 다음과 같다:

- 1- 상시 8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면적 120제곱미터이며 높이가 7미터 이상인 주거용 건물의 공사현장의 고용주
- 2- 거주용이 아닌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8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제4항: (공사현장 개장 고지 내용)

공사장을 개장하는 공지는 고용주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다음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 공사현장의 명확한 주소
- 건설 주가 법인인 경우 기업, 건설 회사의 이름과 주소 또는 상표 이름
- 공사 유형: 도로, 철도, 다리, 댐, 운하, 주거용 건설, 산업 건설, 상업 건설 등.
- 공사 시작 날과 대략 공사기간
- 고용할 대략 근로자 수
- 하도급 업체가 개인일 경우에도 하도급 업무를 할 수 있는 작업 유형

다른 작업 유형에 따라 하도급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 혼자만 하도급 일을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말임.

2- 자세하게 보고할 것:

- 다음 단계에 진행할 다른 작업
-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단들(여러가지 기계, 크레인, 용접 기계 등)

3- 작업 중에 발생할 위험을 기록하고 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 딱딱한 물체가 떨어

어질 위험,끼임 위험, 그리고 깔림 또는 뒤집힐 위험을 사전 방지하는 방법을 언급해야 한다.

4- 근로자가 화장실, 욕실 또는 위생적인 음료 제공과 같은 기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해야 한다.

제5항: (필요 시 확인 사항 제공)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정기적으로 노동관리감독 또는 노동 전담의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확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6항: (공사현장의 게시판)

고용주는 공사현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입구는 공사에 대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게시판은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야 하며 멀리서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공공 도로 (10 ~ 15 미터 거리)에서 볼 수 있어야 하며 항상 깨끗한 상태로 잘 관리해야 한다.

게시판은 다음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 기업주 또는 건설 회사의 이름과 주소
- 건축가의 이름과 주소
- 하도급 업체 이름과 주소
- 고용주가 선택한 공사현장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 게시판을 관리하고 작업 시작 날부터 작업 끝나는 날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7항: (건설 기업, 건설 시설, 건설 회사의 특별 의무)

건설 분야 종사하는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무가 있다.

1- 노동 관리감독관 또는 노동 전담의사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설 기업, 건설 시설 또는 건설 회사가 프로젝트를 받은 모든 공사현장의 목록이 건설 기업, 건설 시설 또는 건설 회사 사무실에 항상 있어야 한다.

- 기업주 또는 건설 회사의 이름과 주소
- 건축가의 이름과 주소
- 공사 유형: 도로, 철도, 다리, 댐, 운하, 주거용 건설, 산업 건설, 상업 건설 등.
- 공사 시작 날과 대략 공사기간
- 고용할 대략 근로자 수

이 Prakas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주는 공사현장 개장 공지사항을 건설 기업, 건설 시

설 또는 건설 회사 사무실에 적어도 5년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

제8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9항: 이 Prakas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Vong Sauth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썩 안 부총리실
- 상임 여자부총리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부 기관
- 행정국 및 재무국
- 지방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및 캄보디아 상업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노동직업훈련부

No: 078/11 K.B/Br.K

프놈펜 2001년 3월 30일

건설현장의 자재 보관과 폐기물 배출 및 청결에 관한 공포(Prakas)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 캄보디아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0908/1055, 2008 년 9 월 25 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02/N.S/94, 1994년 7월 20 일자 참조
- 노동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설립에 관한 법령을 사용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105/003, 2005 년 01 월 17 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실행 및 기능 입안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52 R.N.Kr/B.K , 2005 년 04 월 01 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의 필요에 의거함

결 정

제 1 항: (목표)

이 Prakas 는 다음을 목표로 정한다:

- 노동법에 따라 건설 현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
- 건설 현장은 근로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제 2 항: (주요 용어 정의)

- 고용주는 소유자, 최고 경영자, 이사, 업체 위임자, 기업의 하도급(노동 계약자), 건설 기업, 건설 회사 및 건설 현장 감독자를 의미합니다.
- 위임자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업, 건설 시설 또는 건설 회사의 소유자,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로부터 공식적인 (구두 포함) 권리 양도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하도급(노동 계약자)은 기업, 건설 시설 또는 건설 회사의 소유자, 최고 경영자 또는 이사로부터 첫 번째로 계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 용매(solvent)는 다른 물체를 녹이거나 씻는 데 사용되는 액체물을 의미합니다.

제 3 항: (정리정돈과 청결)

건설현장에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건설현장을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

- 작업장은 근로자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기름이나 기타 물질로 인해 위험에 빠뜨리면 안된다.
- 작업장은 공사 자재, 작업 자재, 쓰레기로 어수선해져서는 안되며, 특히 날카로운 못이 있는 나무조각을 던지면 안된다.
- 폐기물 또는 쓰레기는 매일 버리기 전에는 안전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미리 물을 적셔야 한다.
- 용매(solvent), 기름 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폐기물은 불연성 장소에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 4 항: (건설 자재 및 작업 장비 보관)

건설 현장에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건설 자재 및 작업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1- 건설 자재 및 작업 장비를 보관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 비계 또는 다리 위의 과부하
- 적절한 보호 장치가 갖추지지 않은 경우 추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3 미터 이상의 높이로 보관하는 것
- 대형 크레인 차 원주 내에서 최소 2 미터 거리 유지
-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더미를 쌓아 놓는 것

- 2- 떨어지거나 구르거나 옆질러질 수 있는 모든 물체는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자루 더미는 근로자에게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 겹겹이 배열해야 한다.
- 4- 벽돌 더미는 사람의 키보다 높으면 안된다.
- 5- 유해 물질은 적절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작업 장비, 건설 자재 등은 작업 환경, 근로자 이동 또는 건설 현장의 내부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 5 항: (높은 곳에서 낙하물 보호)

건설 현장에서 고용주는 근로자나 방문객에게 높은 곳에서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물질의 낙하로 인해 해를 입힐 수 있는 파편, 또는 쓰레기를 방지하고 작업 규칙, 현장 청소 프로그램 및 건설 자재 및 장비를 적절하게 보관하기 위해 높은 장소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제6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 7 항: 이 Praka 의 규정에 반대되는 모든 Prakas 의 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8 항: 이 Prakas 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Vong Sauth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쏭 안 부총리실
- 상임 영자부총리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부 기관
- 행정 및 재무 총무부 기관
- 지방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및 캄보디아 상업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노동직업훈련부

No: **086** K.K.B.V/Br.K

프놈펜 2006년 5월 30일

기업의 AIDS 위원회 구축 및 직장 내 HIV / AIDS 예방에 관한 공포(Prakas)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 캄보디아 헌법을 참조
-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헌법 실행 공포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704/001, 2004년 7월 13일자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0704/124, 2004년 7월 15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설립에 관한 법령을 사용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105/003, 2005년 01월 17일자 참조
- HIV /AIDS 확산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실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702/015, 200년 7월 29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실행 및 기능 입안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52 R.N.Kr/B.K , 2005년 04월 01일자 참조

결 정

제 1 항: 이 공포(Prakas)는 인식 향상 및 교육을 추진하고 직장 내 근로자 사이의 HIV/AIDS 확산을 예방과 통제를 위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항: 노동법 제1조에 명시된 바처럼 상시 8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기업을 위한 AIDS에 관한 업무수행 팀 또는 AIDS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제3항: 상시 근로자가 8-50명인 기업의 고용주와 지역노조는 해당 기업 또는 시설에 대해 최소 고용주 대표 한 명 그리고 노조 대표 한 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AIDS에 관한 업무수행 팀 설립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며, 관련 논의에 참석할 때 고용주 대표는 업무팀 팀장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근로자가 15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설일 경우 고용주와 지역노조는 기업과 시설에 대한 AIDS위원회 설립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고용주 대표는 2명 이상, 그리고 지역노조 대표는 2명 이상, 병원 책임자 1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역노조가 많이 구성된 기업의 경우에는 각 노조에서 대표로 한 명씩 파견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4항: 위의 제3조 2항에 명시된 바처럼 AIDS 위원회는 위원회 의장명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고용주 측의 대표는 위원회의 의장을 맡아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장 임명은 투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출마하여 투표 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투표함에 넣는다. 구성원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상자에서 투표 용지를 뽑고 용지에 적힌 이름을 위원회 의장으로 발표한다. 후보자가 한 명만 있는 경우 해당 후보가 자동으로 위원회 의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위원회 의장의 임기가 2년이다.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본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임기 위원회 의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열고 논의해야 한다. 어떠한 합리적 사유가 있을 시 새로운 위원회 의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 위원회 의장은 새로운 위원회 의장이 임명 될 때까지 자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위원장이 결석하여 위원회 의장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구성원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위원회 의장 대행으로 임명된다.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직을 그만두거나 직책을 사임하는 경우, 의장은 고용주측 또는 지역노조측에 새로운 위원의 후보 이름을 요청하고 위원회에 빈 자리를 채우도록 해야 한다.

제5항: 상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수행 팀 또는 AIDS위원회가 설립된 후, 업무수행 팀 또는 위원장은 늦어도 15일 이내에 노동직업 훈련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공포(Prakas)의 부록 샘플에 이름 목록에 따른 업무수행 팀 또는 위원의

이름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6항: 노조가 아직 없는 기업 및 시설의 경우, 상기 제3항에서 언급한 용어인 “지역노조”는 직원 대표 또는 근로자 대표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대체된다.

제7항: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AIDS의 업무수행 팀과 AIDS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이 있다:

- 가. 이 업무수행 팀 또는 위원회의 설립과 업무수행 팀 또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모든 근로자에게 홍보해야 한다.
- 나. 가능한 자주 회의를 하고 HIV/AIDS 확산의 예방 및 통제에 대해 직장 내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개발한다.
- 다. 근로자 간 직장 내에서 HIV /AIDS 확산의 예방 및 통제를 이해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기술 지원, 관련 자료 또는 기타 방법을 직업 의사 부서에 요청한다.
- 라. 노조 대표, 직원 대표, 감독자, 과장, 팀장, 조장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하고, 그들이 일반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 간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 마. 흥미롭고 명확하며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교육한다. 필요한 상황 경우 남성과 여성이 필요할 때 콘돔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바. HIV/AIDS를 앓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HIV/AIDS 감염의 예방,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정상적인 조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사. 각 문제의 상황에 따라 위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 관련 정부부처 또는 기관에게 요청하여 HIV/AIDS에 걸린 근로자를 돕는다.

제8항: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AIDS 위원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책임이 있다:

- 가.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 간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나. 업무 프로그램에 따라 노동 의사 부서나 관할 정부부처 또는 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 다. 회원 또는 근로자의 기타 요구를 받고 적절한 시간을 마련하여 이러한 요구들을 논의하고 해결한다. 필요한 경우 고용주, 노동의사 부서 또는 관할 정부부처나 기타 기구에 요청하여 해결을 구출한다.
- 라. 위원회의 업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결점을 개선하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을 월 1회 또는 최소한 분기마다 1회 회의한다.

제9항: 근로자는 직장에서 HIV/AIDS 확산의 예방과 통제하기 위해 AIDS 업무수행 팀과 AIDS 위원회, 노동 의사 부서 또는 관할 정부 부처의 지침과 교육 홍보를 준수해야 한다.

제10항: 근로자는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 대표 또는 해당 기업 또는 시설의 지역 노조를 통해 AIDS 업무수행 팀 또는 AIDS 위원회에 직장에서 HIV/AIDS와 관련된 특정 요구나 제안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이러한 요구나 요청을 자신의 기업의 AIDS 업무수행 팀 또는 AIDS위원회에 직접 요구하여 해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항: 상기 제3항에 명시된 바 기업 및 시설의 고용주는 제7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기업의 AIDS 업무수행 팀 또는 AIDS위원회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HIV/AIDS에 걸린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요컨대, 해고, 적절한 고용을 제공하지 않음, 다른 근로자와 같은 임금 미지급, 승진 금지, HIV / AIDS로 인한 혜택 미지급 등.

제12항: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HIV/AIDS가 직장에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함

직장 내에서의 HIV/AIDS는 직장 생활에 심각한 질병이나 기타 상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노동력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직장은 지역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HIV/AIDS의

확산을 줄이고 이 질병이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가장 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차별금지

적절한 조건에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자세로 HIV/AIDS에 걸린 사람과 이 질병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HIV/AIDS를 걸렸다는 정보때문에 근로자를 차별할 필요가 없다.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무시는 이 질병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방해한 것이다.

다. 성 평등

HIV/AIDS와 관련된 성별 척도를 인식해야 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감염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여성은 HIV/AIDS 전염병의 영향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대문이다. 사회에서 성차별이 아직까지 심각하고 여성이 사회에서 작은 역할을 하는 한 여성은 HIV/AIDS에 더 취약할 것이다. 따라서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부여는 HIV 확산을 예방에 있어서 여성이 이 질병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핵심이다.

라. 편안한 작업 환경

1981년 산업안전 및 건강에 관한 협약 155 호에 따라 작업장 환경은 편안하고 안전해야 하며 모든 영역에 접근 가능하고 HIV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쾌적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건강 또한 정신적 건강 상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힘을 용이하게 한다.

마. 사회적 협상

HIV / AIDS 정책 및 프로그램의 구현은 고용주와 근로자 및 그들의 대표자와 정부 공무원 간에 협력과 신뢰가 있어야 하며, HIV / AIDS 감염된 근로자와 HIV / AIDS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바. 고용 거부에 대한 HIV의 피 검사

일을 지원하는 사람 또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HIV / AIDS에 대한 피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 비밀보장

일을 지원하는 사함이나 근로자에게 HIV / AIDS에 관련 개인정보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 근로자도 개인정보를 다른 근로자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 HIV / AIDS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때는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 노동 기구의 정책에 부합하는 기밀 유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아. 지속적인 업무관계 유지

HIV 감염은 업무 해고의 이유가 아니다. 다른 조건과 비교하여 HIV 감염자는 의사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자. 예방

HIV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 모든 병원체의 예방은 국가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여러 전략을 통해 수행 할 수 있다. 예방은 태도와 행동을 바꾸고 지식 향상, 치료와 차별 없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사회에서 일하는 파트너들은 모두 예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HIV / AIDS 감염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제공, 교육,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개선을 통해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

차. 관리 및 지원

일의 세계에서 연대, 보살핌 및 지원은 HIV 질병에 대응하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 HIV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들과 그 가족은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 고용지원 계획의 서비스와 혜택을 사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13항: 노동 및 직업훈련부의 노동의 부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기술 지원, 자료, AIDS 업무수행 팀 또는 기업의 AIDS 위원회에 방법을 제공하여 업무수행 팀 또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한다.
- 이 Prakas 조항의 구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이 Prakas의 조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해하도록 위의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업 및 시설의 고용주에게 홍보하고 설명한다.
- 이 Prakas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조언을 제공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심각한 경우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 Prakas 의 조항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용주에게는 다양한 형태로 칭찬이나 격려를 제안한다.

제 14 항: 이 Prakas 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Nhem BunChen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장관협의회실
- 모든 관련 사역부
- 국가 AIDS 당국 "통보하기 위해"
-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지방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및 캄보디아 상업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조연합, 노조, 지역노조 "이행하기 위해"
- 왕관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No: 124 S.K.B.Y

프놈펜, 2000년

2월 10일

수동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것에 관한 공포 (Prakas)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장관

- 캄보디아 왕실의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1198-72, 1998년 11월 30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699/06, 1999년 6월 17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87 R.N.Kr/B.K , 1999년 10월 4일자 참조
- 노동 자문위원회 회의의 사명감을 참조

결 정

제1항: 노동법 제1항에 명시된 바처럼 기업 및 시설의 고용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되는 무거운 물체를 들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하며 특히 척추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 한 명 또는 여러 명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 들어 올릴 때
- 실어 올릴 때
- 내려 놓을 때
- 밀어 넣을 때
- 끌어당길 때
- 수동으로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킬 때

제2항: 수동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기 위한 좋은 조치가 되기 위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 각 중량에 맞게 나눈 패키지를 배열 있게 잘 준비하고 무게는 50kg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가장 가까운 곳에 통로를 배치해야 하며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동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근로자를 강제로 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을 도움이 되는 기술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제3항: 임신부나 출산한 후 새로운 복귀한 여성 또는 유산한 여성은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5kg 이상 물건을 들어올리지 말아야 한다.

제4항: 근로자는 아래 표에 표시된 무게를 초과하여 수동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끌어당기거나 밀어 놓거나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무게 구분	남성		여성	
	15살부터	18살부터	15살부터	18살부터
수동으로	12kg	50 kg	6 kg	25 kg
현장 내 사용한 1개 바퀴 있는 손수레	32kg	80 kg	금지	40 kg
현장 내 3-4개 바퀴 있는 손수레	48 kg	120 kg	24 kg	60 kg

제5항: 기업의 내부 규정은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는 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부 규정의 조항은 이 Prakas의 조항과 모순 될 수 없다.

제6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 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7항: 이 Prakas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ITH SAMHENG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장관협의회의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모든 지방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No: 125 S.K.B.Y

프놈펜, 2001년 3월 15일

환기와 작업 현장의 위생에 관한 공포 (Prakas)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장관

- 캄보디아 왕실의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1198-72, 1998년 11월 30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699/06, 1999년 6월 17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87 R.N.Kr/B.K , 1999년 10월 4일자 참조
- 노동 자문위원회의 사명감을 참조

결 정

제1항: 노동법 제1항에 명시된 바 기업 및 시설의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 내 깨끗한 환경을 갖도록 해야 한다. 환경에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증기, 가스, 먼지 등과 같은 물질이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이나 냄새가 없어야 한다.

제2항: 오염이 없는 작업장 내 환기는 자연적 환기나 인공적 환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

다.

- 자연적 환기를 보장할 수 있는 문, 창문 또는 통풍구를 만들 수 있으며 문, 창, 통풍구의 총 면적은 건물 또는 작업장 면적의 1/4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오염된 공기를 흡입할 수 있고 인공 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문, 창, 통풍구의 총 면적은 건물 또는 작업장 면적의 1/4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항: 환경에 배출되는 유해 가스, 증기 또는 먼지 등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 없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에 배출되는 제거하는 생산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환경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생산 원산지에서 점진적으로 찾아내고 환경 보호법에 따라 방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해물질로 환경 오염된 건물이나 작업장은 격리되어야 한다.

제4항: 기술적인 방법으로 환경의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각 근로자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 보호장비들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한다고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5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6항: 이 Prakas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ITH SAMHENG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장관협의회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모든 지방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No: 138 S.K.B.Y

프놈펜, 2003년 4월 22일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관한 공포 (Prakas)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장관

- 캄보디아 왕실의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1198-72, 1998년 11월 30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699/06, 1999년 6월 17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87 R.N.Kr/B.K, 1999년 10월 4일자 참조

결 정

제1항: 노동법 제1항에 명시된 바 기업 및 시설의 고용주는 작업장에서 소음을 최대한 낮게 조정해야 하며, 이 소음은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계 내에 있어야 하며, 특히 모두의 귀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제2항: 상기 제1항에 명시된 바처럼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 저소음 생산 방법을 찾아 시행한다.
- 작업 시설로부터 소음의 원인을 줄이고 특히 기계나 장비로부터 나는 소음.
- 작동 중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 시설은 격리해야 하며 가장 적은 수의 근로자가 필요하다.
- 한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소음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 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물 구조를 설치

제3항: 매일 받는 소음 평균 또는 각 근로자가 하루 동안 근무시간 동안 받는 소음 평균 수준은 85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항: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소음을 85데시벨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이 장비가 실제로 사용되는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5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6항: 이 Prakas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ITH SAMHENG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장관협의회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의 행정 및 재무국
-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모든 지방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No: 139 S.K.B.Y

프놈펜 2003년 4월 22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관한 공포 (Prakas)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장관

- 캄보디아 왕실의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1198-72, 1998년 11월 30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699/06, 1999년 6월 17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87 R.N.Kr/B.K , 1999년 10월 4일자 참조

결 정

제1항: 밀폐공간은 대형 통, 탱크, 협곡, 배 바닥, 운하, 배수관, 우물, 광산의 도로, 지하, 수족관 등의 공간이다. 또한, 작은 구멍이나 입구가 없는 호흡을 위한 충분한 공기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증기 속에는 산소가 부족할 수 있으며 독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의 구멍, 입구 또는 증기가 발생하는 곳의 입구는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출입하거나 구조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여야 한다.

제2항: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 특히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화재 또는 폭발 없어야 한다
-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이 없어야 한다.
- 독성 가스, 증기 또는 먼지에 중독되지 않아야 한다
- 대기를 과열하지 않아야 한다.
-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제3항: 건설 현장 밀폐공간에서는 자연 또는 인공 환기는 작업하는 동안 또는 1시간의 1인당 최소 30m³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제4항: 용접, 도료 등 밀폐공간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유해 물질의 분산은 공기 배출 및 공기 청정 공포(Prakas)에 따라 원천에서 공기를 내보내야 한다. 공급한 공기량은 흡입되는 공기량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밀폐공간 공기질은 작업하는 동안 내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제5항: 밀폐공간의 대기를 적절하게 청정할 수 없는 경우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호흡을 위해 밀폐공간의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자율 보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6항: 밀폐공간에서 고용주는 머리 및 얼굴을 보호하는 헬멧, 의복, 두꺼운 신발, 장갑, 보호 안경 등과 같은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7항: 밀폐공간이 비좁거나 가연성이 있고 폭발하는 경우 그곳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 및 조명 장비의 품질이 양호해야 한다.

제8항: 근로자가 작업장에 들어갈 때마다 고용주는 감사하는 동행자 한 명을 보내야 하며 눈과 목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필요할 때 끌어올릴 수 있는 로프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제9항: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감시하는 동행자는 적절한 구조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밀폐공간 규칙
- 응급이 있을 때 대처하는 행동 및 자세
- 응급 조치 기술

제10항: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배정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응급 조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대표가 발행한 밀폐공간 작업 지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 지시 허가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 해야 할 작업
- 작업할 근로자 이름
- 작업 지시 허가 발행자 이름 및 직위
- 감시자 이름 및 직위
- 준수해야 할 주요 보안 조치

제11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 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12항: 이 Prakas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ITH SAMHENG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장관협의회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의 행정 및 재무 부서
-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모든 지방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보건부

No: **139** S.K.B.Y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및 보건부의

기업 전담의사의 조건과 의료서비스의 업무에 관한 공동 공포 (Prakas)

보건부 장관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장관

- 캄보디아 왕실의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1198-72, 1998년 11월 30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699/06, 1999년 6월 17일자 참조
- 보건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196/06, 1996년 1월 24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87 R.N.Kr/B.K , 1999년 10월 4일자 참조
- 보건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67 R.N.Kr/B.K, 1997년 10월 22일자 참조
- 보건부와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의 필요에 의거함

결 정

제1항: 기업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는 다음과 같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캄보디아 국적이 있어야 한다.
- 보건부로부터 인증된 의료학원증명서 있어야 한다.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의 노동 의사과에서 산업 위생에 관한 교육과 산업안전 기술에 관한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 의사협의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 범죄한 적이 없어야 한다.
-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건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노동 의사과로부터 2년마다 1회 발급해주는 기업 의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제2항: 기업의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임무가 있다:

- 1년마다 갱신되는 직업계약서 있어야 하며 노동 의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 기업의 계약된 조건으로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급여를 받고 기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신 전공으로 직업을 갖을 수 있다.
- 기업의 위생 및 직업 보안에 대한 자문할 수 있다. 기업에서 올바른 조언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즉시 노동 의사 책임관 또는 노동 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의사의 전문적 비밀과 기업 생산 방법의 기술적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노동 의사의 직업 윤리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

제3항: 기업 의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건강을 산업재해 및 직업질병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기업 의사의 주요 임무이며 이는 다음과 같다:

- 작업장의 작업 조건과 생산 기술 그리고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 및 기계의 안전 조건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검사해야 한다.
- 근로자에게 신체 조건이 약해진 원인 또는 산업재해 원인과 직업질병에 대한 정보 또는 조언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 기업의 사무실, 작업장, 식당 등의 환경 및 일반 위생을 관찰해야 한다.

2- 다음과 같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모든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문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근로자가 퇴사 시 진단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준다.
- 병원의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일일 목록, 사고에 관련 근로자 목록, 예방 접종 목록 등).
- 산업재해 및 직업질병 또는 전염병 등에 관련 부서 및 관계 있는 기관에 통보
- 노동 의사부에 월별, 분기 별, 반기 별 및 연간 별 보고서를 작성한다.

3- 기업 내외부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

- 기업 내부에서는 생산계획부서, 직원대표, 노조, 기업의 위생 및 보안 위원회 등과 소통한다.
- 기업 외부에서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노동 책임관, 노동 책임관 또는 기타 실험실과 소통한다.

1.

제 4 항: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표는 기업의 의사에게 자신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제 5 항: 고용계약기간 만료 전에 기업의 의사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노동 의사 책임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제 6 항: 이 Prakas 가 시행, 공포되기 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기업 의사는 이 Prakas 의 제 1 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 제출해야 한다.

제7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8항: 이 Prakas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프놈펜, 2001 년 6 월 28 일

장관

고위급 장관

ITH SAMHENG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장관협의회의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모든 지방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No: **147** S.K.B.Y

프놈펜, 2002년 6월 11일

작업장에서의 온도에 관한 공포 (Prakas)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장관

- 캄보디아 왕실의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1198-72,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699/06, 1999년 6월 17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87 R.N.Kr/B.K, 1999년 10월 4일자 참조
- 노동 자문위원회 회의의 사명감을 참조

결 정

- 제 1 항: 노동법 제 1 항에 명시된 바 기업 및 시설의 고용주는 작업장의 온도 환경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한다. 이 온도환경 시스템은 근로자의 건강에 적합해야 하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온도환경 시스템은 작업장에 설치된 온도계 "온도계"로 확인되어야 한다.
- 제 2 항: 건물 또는 작업장은 최소 10m³가 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강한 햇빛의 열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비열 생산 방법은 특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생산에서 열이 너무 많이 방출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열을 줄여야 한다:

- 열을 방출하는 작업 장비 열 방출 시스템을 묶거나 막아야 한다.
- 열을 흡수하고 근원의 열을 피한다.

제 3 항: 작업장이 과열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되는 경우, 고용주는 선풍기, 에어컨과 같이 작업장을 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아야 한다.

제 4 항: 심한 추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두꺼운 옷, 모자, 장갑과 같은 방한 용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5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6항: 이 Prakas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ITH SAMHENG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장관협의회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행정 및 재무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모든 지방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왕국
국가 종교 국왕

노동직업훈련부

제176호 K.B/Br.K

근로자, 직장위원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 및 산업안전 교육에 관한 부령

Prakas on Education on Hygiene and Technicality for Occupational Safety to
Workers, Shop Stewards and Unions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 캄보디아왕국의 헌법을 참조하고
- 캄보디아 왕립정부의 지명에 관한 2008년 9월 25일 자 왕실령 제 NS/RKT/0908/1055호를 참조하고
- 각료회의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는 1994년 7월 20일 자 왕실법률 제 02/NS/94호를 참조하고
- 노동법을 공포하는 1997년 3월 13일 자 왕실법률 제Ch.S/RKM/0397/01호를 참조하고
- 노동직업훈련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는 2005년 1월 17일 자 왕실법률 제 NS/RKM/0105/003호를 참조하고
- 노동직업훈련부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이 부령은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사업장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요구하기 전에 보건 및 산업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데 유념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용주(employer)”란 기업/사업장을 설립하고 정규직 여부를 불문한 근로자 1인 또는 그 이상을 고용하는 자연인 또는 공공·민간 법인을 말한다.
- “기계(machinery)”란 역학에너지, 풍력, 증기, 열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부품이 결합된 것으로, 인간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성되고 사전 안전 교육 또는 안전을 위한 보호 격벽 등이 없는 경우에 인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생물학적 위험(biological risk)”이란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생물, 바이러스 또는 생물 유래 독성물질을 의학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 또는 그러한 미생물이나 물질의 시료로 인해 유발되는 위험을 말한다.
- “격리구역 작업(isolated work)”이란 작업 지시를 하려면 무전기로 소통하여야 하는 격리된 공간에서 요구되는 작업을 말한다.
- “환기가 제한된 작업구역(working area with limited ventilation)”이란 대형 컨테이너, 탱크, 깊은 구덩이, 선박의 밑바닥, 지하 통로, 하수관, 우물, 탄광 선로, 지하실, 창고 등 충분한 공기의 유출입이 불가능한 작은 구멍이 나 있는 협소한 작업 장소를 말한다.
- “야간작업(night work)”이란 「노동법」 제144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이어지는 작업을 포함하여 11시간 연속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범위)

「노동법」 제1조에 규정된 기업/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자 및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각 작업장에서 수행되는 작업과 관련된 위생, 산업안전 및 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주의 의무)

기업/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자 및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기업/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효과적인 예방조치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근로자 교육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는 매년 작성 및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한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 물리적 위험
- 화학적 위험
- 생물학적 위험
- 기계 사용과 관련된 위험
- 기계에 의한 중량물 하역 작업과 관련된 위험
- 기업/사업장 내 기계 운전과 관련된 위험
- 전기 관련 위험
- 화재 또는 폭발 위험
- 높은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
- 인력에 의한 중량물 하역 작업과 관련된 위험
- 격리구역 작업과 관련된 위험
- 환기가 제한된 구역 내 작업과 관련된 위험
- 야간작업과 관련된 위험
- 식품 및 영양 관련 위생
- 작업 태도(work attitude)와 관련된 위험
- 건물 및 출입구 안전
- 작업으로 인한 긴장(스트레스)
- 기타 다루어야 하는 위험

제6조(직능별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주는 각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생, 보건 및 산업안전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교육은 유익하고 근로자의 작업장에서 교육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효과적인 예방조치 및 보호장비 일체에 관한 명확한 설명
- 긴급상황 및 상호 조력 시 취해야 하는 제스처와 행동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자 및 그 대표자에게 상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 고용 개시 시점
- 작업장 변경 시
- 생산 기술 또는 기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화학물질을 도입할 때
- 생산라인 시스템 변경 시
- 근로자가 장기휴가(1개월 초과)를 취한 경우

교육은 전문 기술자가 전담하고 근무시간 중에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에 참여 중인 근로자는 평상시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고용주는 이 부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도 자신의 기업/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및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위생, 보건 및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능·위험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 부령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부령의 특정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부령을 위반한 자는 「노동법」 제16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는다.

제10조:

이 부령은 아래에 기재된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013년 6월 19일, 프놈펜

장관

(서명 및 직인)

Vong Sauth

수신처:

- 왕궁부
- 상원 사무처
- 훈센 총리 비서실
- 관방부
- 쏭안 부총리 비서실
- 영구직 부총리 비서실
- 모든 관계 부처
- 노동조합총연맹 “참고용”
- 사용자협회 및 캄보디아통상협회
- 행정재무국
- 노동국 “배포 및 실행용”
- 시·주청 노동직업훈련과 “직무 수행용”
- 모든 라디오·TV 방송국 “배포 지원용”
- 기록보존소

캄보디아왕국
국가 종교 국왕

노동직업훈련부

제194호 KB/Pr.K

유흥접객업체의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관한 부령
Prakas on Working Condi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ules of
Entertainment Service Enterprises, Establishment and Companies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 캄보디아왕국의 헌법을 참조하고
- 캄보디아 왕립정부의 지명에 관한 2013년 9월 24일 자 왕실령 제 NS/RKT/0913/903호를 참조하고
- 각료회의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는 1994년 7월 20일 자 왕실법률 제 02/NS/94호를 참조하고
- 노동법을 공포하는 1997년 3월 13일 자 왕실법률 제CS/RKM/0397/01호를 참조하고
- 노동직업훈련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는 2005년 1월 17일 자 왕실법률 제 NS/RKM/0105/003호를 참조하고
- 노동직업훈련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2005년 4월 1일 자 총리령 제52호 ANKr.BK를 참조하고
- 노동직업훈련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2012년 12월 28일 자 공동부령 제1009호 SHV.Prk를 참조하고
- 근로자, 직장위원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입문교육에 관한 2013년 6월 19일 자 부령 제176호 KB.PrK를 참조하고
- 2014년 6월 17일 자 노동자문위원회 합의사항을 참조하고
- 노동직업훈련부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목표 및 범위)

이 부령은 유흥접객업체의 고용주가 「노동법」 규정을 올바르게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령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노동법」 규정의 차별 없는 이행을 촉진한다.
- 유흥종사자와 관련된 고용주의 「노동법」 규정 이행 의무를 명확하게 한다.
- 「노동법」에 명시된 유흥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복지혜택에 대한 해당 근로자들의 의식을 제고한다.
- 「노동법」에 따라 유흥접객업체의 고용주와 유흥종사자 간 노사관계를 개선한다.
- 이 부령은 캄보디아왕국 전체의 모든 유흥접객업체에 적용된다.

제2조(정의)

이 부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유흥접객업체(entertainment service enterprises, establishment and companies)”란 호텔, 식당, 게스트하우스, 가라오케/노래방, 디스코텍, 맥주 바, 카지노, 마사지 시술소, 문화·생태관광 오락시설 등에서 여하한 종류의 음료를 제조, 소매 또는 도매하는 기업·사업장을 말한다.
- “유흥접객업체의 고용주(entertainment service employer)”란 유흥접객업체를 운영하고 정규직 여부를 불문한 근로자 1인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공공·민간 법인을 말한다.
- “유흥종사자(entertainment worker)”란 유흥접객업체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과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여하한 종류의 음료(all types of beverage)”란 여하한 종류의 와인, 맥주, 기타 주류, 탄산음료, 생수, 과일주스 등을 말한다.

제3조(법 규정의 이행 의무)

유흥접객업체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은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규정과 그 밖에 유흥종사자에 관한 기타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여하한 종류의 음료를 제조, 소매 또는 도매하는 기업·사업장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은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법령에 명시된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항과 그 밖에 유흥종사자에 관한 기타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술한 의무는 유흥종사자가 여하한 종류의 음료를 판매 또는 홍보하기 위해 호텔, 식당, 게스트하우스, 가라오케/노래방, 디스코텍, 유흥클럽, 맥주 바, 카지노, 마사지 시술소 또는 문화·생태관광 오락시설로 파견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제4조(유흥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복지혜택)

유흥종사자는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부과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명시된 권리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유흥접객업체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은 유흥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유흥종사자의 최장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주당 48시간이다.

유흥접객업체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최장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성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관계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6조(근무불이행 기간분의 급여 지급 불가 및 징계조치)

무단결근 또는 지각출근을 한 유흥종사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다. 다만, 고용주는 그러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하는 유흥접객업체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업체의 내규에 그러한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유흥종사자에게 감봉 형식의 징계조치를 하는 행위는 「노동법」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유흥종사자의 고용 종료는 「노동법」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노동)

누구든지 유흥종사자에게 초과근무, 음주, 약물복용 또는 낙태 등을 강제하거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유흥종사자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폭력 행사)

누구든지 유흥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교육)

유흥접객업체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은 노동직업훈련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2012년 12월 28일 자 공동부령 제1009호 SHV.Prk 및 근로자, 직장위원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입문교육에 관한 2013년 6월 19일 자 부령 제176호 KB.PrK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흥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유흥종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그러한 수료증은 유흥 접객업체의 고용주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간주된다.

제10조(벌칙)

이 부령을 위반한 자는 「노동법」 제16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형사처벌 제외)을 받는다.

제11조(상충 규정)

이 부령과 상충하는 규정은 무효로 간주된다.

제12조(적용 범위)

이 부령은 아래에 기재된 서명일부터 적용된다.

2014년 8월 20일, 프놈펜

서명 및 직인

장관

Dr. Ith Samheng

수신처:

- 관방부
- 왕립정부 사무처
- 총리 비서실
- 영구직 부총리 비서실
- 모든 관계 부처/기관
- 시·구청 “참고용”
- 노동직업훈련부 산하 기관 전체
- 사용자협회
- 노동조합 “배포 및 실행용”
- TV·라디오 방송국 “배포용”
- 왕실관보
- 기록보존소

캄보디아왕국
국가 종교 국왕

사회노동직업훈련청소년재활부
제243호 K.B/Br.K

2002년 9월 10일, 프놈펜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상공식 및 노동능력 상실률에 관한 부령
Prakas on Notific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s, Formula for Compensation
and Ratio of Loss of Working Capacity

사회노동직업훈련청소년재활부 장관은

- 캄보디아왕국의 헌법을 참조하고
- 왕립정부의 지명에 관한 1998년 11월 30일 자 왕실령 제1198/72호를 참조하고
- 각료회의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는 1994년 7월 20일 자 왕실법률 제 02/94호를 참조하고
- 노동법을 공포하는 1997년 3월 13일 자 왕실법률 제0397/01호를 참조하고
- 사회노동직업훈련청소년재활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는 1999년 6월 17일 자 왕실법률 제0699/06호를 참조하고
- 사회노동직업훈련청소년재활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1999년 10월 4일 자 총리령 제87호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그 성격이 공기업, 준공기업 또는 민간기업, 종교적 또는 비종교적 사업체, 직업교육 또는 자선 사업체 또는 여하한 협회나 단체에 속한 자유전문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업, 광업, 상업, 수공업, 농업, 서비스업, 토지·수자원 및 운수업 부문의 기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임원은 업무상 사고(이하 “산업재해”라 한다) 발생 시 프놈펜 소재 기업인 경우 사회노동직업훈련청소년재활부(MOSALVY, Ministry of Social Affairs,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and Youth Rehabilitation) 사회보장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프놈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지역의 시·주청 사회노동직업훈련청소년재활 담당 감사관실(Inspectorate)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산업재해 발생보고서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휴무일 및 공휴일 제외)에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 포함) 또는 인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부령의 별표 1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서 서식이 제시되어 있다.

제3조

산업재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신의 고용주 또는 그 합법적 대리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러한 의무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근로자가 보고할 수 없는 완전한 불능 상태이거나 기타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면제된다.

근로자 대표, 팀장 또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의 수신인에는 사회보장국 또는 시·주청 사회노동직업훈련청소년재활과가 참조(CC)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동 중 발생한 사고(법률에 산업재해로 규정된) 또는 지방 또는 해외에서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직접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제4조

직책을 불문한 근로자 또는 유·무급 수습근로자가 여하한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원인을 불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사고는 해당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사고로 간주된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적 용무를 위한 여타 장소 또는 업무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여타 장소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경로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법률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도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제5조

사고 발생 시, 고용주 또는 사업주, 사회보장국 및 시·구청 사회노동직업훈련청소년재활담당 감사관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A. 고용주 또는 사업주

-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즉시 시행한다.
- 관계 부처에 보고한다.
- ‘심각한 사고’ 또는 ‘사망사고’인 경우에 사고 현장을 보존한다.
- 원래의 현장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조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충분히 제공한다.
- 사고 목격자가 조사위원회에 진술할 수 있도록 목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 전문적인 분석을 위한 조사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보고서에 기재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한다.

B. 사회보장국

- 노동의료국과 근로감독국에 즉시 통보하여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사고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 최대한 신속히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C. 시·구청 감사관실

- 최대한 신속히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 심각한 사고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그러한 사고의 발생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사회보장국에 보고한다.

담당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고의 산업재해 여부 판단,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부령의 별표 2에는 해당 보고서의 서식이 제시되어 있으며, 별표 3과 별표 4에는 산업재해에 관한 반기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서식이 제시되어 있다.

제6조

국가사회보장기금(National Funds for Social Security)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령의 제1조에 명시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임원은 응급처치 비용과 더불어 산업재해수당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수당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된다.

- 요양 및 입원 비용
- 일일수당(daily allowance)
- 연금
- 장의비(葬儀費) 및 피해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업무상 사고로 간주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를 초래한 제3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도 산업재해수당으로 간주된다. 고용주는 피해자에게 산업재해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 그러한 제3자를 상대로 해당 수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제3자와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선 피해자에게 산업재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법원이 기업의 파산을 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7조

고용주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 부분장해나 완전장해(MOSALVY가 승인한 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판정된)를 초래한 산업재해의 피해자에게 입원 및 재발 기간 중 입원 및 치료 비용과 회복 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료수당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내과·외과·치과 치료, 방사선·초음파 검사, 진단검사, 그 밖에 의사가 요구하는 검사

에 대한 수당

- 투약 및 2차적 처치 비용에 대한 수당
- 의원 및 기타 의원급 시설에서 이용하는 간병인에 대한 수당
- 의지(義肢) 및 지팡이나 장애인용 전동차와 같은 기타 보조기의 지급 및 수리
- 병원 또는 자택 이송 비용
- 재활치료 비용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더 나은 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산업재해가 노동능력 상실률 20% 이상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 및 업무 복귀 불능(일시적 결근)을 초래하는 경우, 피해자는 MOSALVY가 승인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제7조에 규정된 수당과 더불어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5일 차부터 일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일수당은 피해자의 평균 일급(daily wage)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평균 일급은 피해자의 기본급(base wage)을 근무일 수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기본급은 순임금(net wage)에 초과근무수당 및 직무수당(duty allowance)과 같은 부가 급부와 교통수당, 직업수당, 임무수당(mission allowance) 등의 기타 수당(가족수당 제외)을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기본급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달의 전월에 지급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2. 2주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2주 단위 기간의 직전 2개의 2주 단위 기간에 지급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3. 주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주의 직전 4주 동안 지급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4. 1일 단위로 지급되거나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근무일 및 유급공휴일에 지급된 일급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5.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에 대한 총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6. 피해자가 계절근로 또는 단속적 근로(intermittent work)를 한 경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에 대한 총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가 질병, 일반적 사고, 출산, 유급휴가 또는 재발로 이어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기본급의 산정은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노동의료국으로부터 치유 및 업무 복귀 가능 판정서를 수령한 경우,

- 피해자가 상기 판정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6근무일 이내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퇴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 고용주는 피해자를 원래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그러한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 고용주는 12개월에 대한 평균 일급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상 사고가 노동능력의 20% 이상 영구적 상실 또는 사망(MOSALVY가 승인한 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판정된)을 초래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수급권자는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연금은 연 기본급 및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함수관계에 있다. 산업재해연금은 부상이 치유된 후에 지급되어야 한다. 치료 기간 중 피해자는 제8조에 규정된 일일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연 기본급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통상적인 경우, 사고 발생일 기준 12개월간의 기본급(제8조에 규정된)에 상당하는 금액
- 피해자가 여하한 직장에 사고 발생일 기준 12개월 미만 고용된 상태인 경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지급받아 온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더 나은 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

- 피해자가 질병, 일반적인 사고, 출산 또는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가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노동능력 상실률이 20~50%인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산정된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blacksquare R_1 = 1/2SX_1$$

여기서 R_1 은 연금, S 는 연 기본급, X_1 은 20~50%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이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연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blacksquare R_2 = S[1/250\% + 1.5(X_2 - 50\%)]$$

여기서 R_2 는 연금, S 는 연 기본급, X_2 는 50%를 초과하는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이다.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제3자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는 상기 연금을 40% 증액하여야 한다.

연금을 지급받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건강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피해자가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직업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고용주는 피해자가 치유된 후 노동의료국에서 2차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무는 피해자가 5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용주는 2차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용주는 사망사고 피해자의 장의비를 부담하고 해당 피해자의 피부양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다.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피해자의 배우자: 유효한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

혼 또는 별거 중이 아니어야 한다.

- 피해자의 피부양 자녀: 16세 이하의 미혼 자녀여야 한다. 그러한 연령 한도는 자녀가 견습(apprenticeship) 과정에 있는 경우에 18세로 상향될 수 있으며, 자녀가 공립 고등학교·대학교 또는 인가된 유료 사립 고등학교·대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및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치유 불가능한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22세로 상향될 수 있다.

장의비는 피해자의 평균 일급에 90을 곱하거나 피해자의 3개월 단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피해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피해자의 연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배우자: 30%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장남/장녀 및 차남/차녀: 15%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삼남/삼녀: 10%

다만, 총 연금액은 연 기본급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금 수급자격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고용주와 피해자의 수급권자가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는 연금의 월 단위 지급 또는 일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이 부령의 별첨 5에는 피해자의 부상 유형, 그 밖에 연령, 신체적·정신적 적성, 직업자격 (occupational qualification) 등과 같은 일반적 조건에 따라 분류된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 등급이 제시되어 있다.

제13조

MOSALVY의 노동의료국은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상 질병의 유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 부령을 위반한 자는 「노동법」 제16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기소된다.

제15조

사회노동보훈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Labor and Veteran Affairs)의 1998년 2월 12일 자 부령 제58호는 폐지된다.

제16조

이 부령은 아래에 기재된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노동직업훈련부(MLVT)

결정사항

제1조

캄보디아 「노동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고용주(이하 “선주”라 한다)는 근로조건, 산업안전 및 양호한 생활 환경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작업복)

선주는 각 근로자에게 계절당/매년 작업복 두 벌을 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첫 번째 작업복은 근로자가 고용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각각의 작업복은 두 부분(상의 및 치마/바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체에 맞는 크기이고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선주는 세제와 같이 작업복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작업복의 사용 및 청결 유지에 관한 내부 규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보호장구)

선주는 각각의 근로자에게 구멍조끼, 플라스틱 구멍 도구, 호루라기, 비옷, 모자 등과 같은 보호장구를 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주는 무전기와 같은 필요한 통신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위생 및 음료수)

선주는 2000년 2월 10일 자 부령 제54호 MoSALVY/skby에 언급된 바에 따라 위생 상태를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근로자에게 음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체력단련운동)

2001년 6월 15일 자 부령 제14호 MoSALVY/skby에 언급된 바에 따라 특히 여성 및 18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웨이트트레이닝 같은 체력단련운동이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

15세 미만 연소자는 어로작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5세 이상 18세 이하 연소자는 선상 작업만 허용되며, 해상 및 수중 작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보건서비스)

선주는 사내 진료소 설치에 관한 2000년 12월 6일 자 공동부령 제330호 및 사내 의사의 자격 조건과 임무에 관한 2001년 6월 28일 자 공동부령 제139호¹⁾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근로자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선주는 이 부령의 캄보디아어본을 모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작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 부령은 아래에 기재된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1) [번역자 주] 파일마다 영어 명칭이 제각각이어서 'Guidelines' 파일의 '부록 11'과 '부록 12'에 수록된 두 법령의 내용을 참고해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CC:

- 국왕 비서실
- 상원 사무처
- 국회 사무처
- 총리 비서실
- 관방부
- 모든 관계 부처 “참고용”
- 노동국
- 행정재무국
- 시·구청 노동직업훈련과 “배포 및 실행용”
- 사용자협회 “실행용”
- 노동조합 “참고용”
- 모든 라디오·TV 방송국 “배포용”
- 기록보존소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노동직업훈련부

No: 306 K.B/Br.K

프놈펜, 2007년 12월 14일

플랜테이션에서의 작업과 생활 조건에 관한 공포(Prakas)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 캄보디아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0704/124, 2004년 7월 15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령 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설립에 관한 법령을 사용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105/003, 2005년 01월 17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실행 및 기능 입안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52 R.N.Kr/B.K, 2005년 04월 01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의 필요에 의거함

결 정

제1항 (실행범위)

차, 사탕수수, 고무, 바나나, 코코넛, 망콩, 담배, 굴, 팜유 퀴닌, 파인애플, 후추, 면화솜, 수수 또는 기타 산업작물농과 같은 작물 재배 및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농장의 고용주는 근로자와 가족의 근로 조건과 생활 조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항: (공동 조항)

- 작업 의복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 보호하는 옷, 바지와 신발을 포함한 의복을 일년에 두 번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 수동 도구 및 개인보호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수동 도구와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 작업장에서 수동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

수동으로 물건을 들어올리는 프로세스는 수동으로 물건 올리는 것에 관한 2001년 6 월 15일자 시행한 공포(Prakas) 12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소음

소음은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관한 2003년 4월 22일자 시행한 공포(Prakas) 134 S.K.B.Y 의 규정된 범위보다 높으면 안된다.

- 화재 방지

고용주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소화 도구의 유형은 위험도에 적합해야 한다

고용주는 묘목장과 기타 농장, 처리장 및 변형 작업을 위한 공장, 행정 일을 하는 장소와 같은 장소에는 화재 발생에 대한 경고 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고 안내문은 근로자가 쉽게 잘 보이는 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 경고 안내문은 화재 경보 및 장소 번호, 응급처치 수단, 소방 및 구조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 금연 경고

건강 위험, 원료 유형, 농장 환경, 사용할 화학 물질 또는 화학 성분과 연관성이 있는 화재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는 작업장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 작업장 교육 및 보안

고용주는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산업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설명해야 한다:

- 전문성 및 정확성을 갖추어 일하는 자세

- 직면해야 할 위험
- 정확한 예방 조치, 그 이점 및 각 예방 기능
- 농장 구역에 있는 차량, 기계, 그리고 사람에 대한 교통조치
- 작업장에서 대피하기 위한 소방 규칙 및 보안 신호에 대한 정의
- 업무에 관련 사고 또는 업무 관련 중독 피해자를 위한 응급 안내
- 근로자를 위한 각종 장소의 이용 조건
- **이 교육은 다음과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
- 기업에서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화학적 위험 및 예방 조치
- 기계 및 기타 작업 장비 사용에 대한 위험 및 예방 조치
- 차량 및 기계 이동에 대한 위험 및 예방 조치

제3항 (경작지)

- 출입구

- 고용주는 처리장 및 변형 작업을 위한 공장과 연결된 도로 및 출입구 시스템 그리고 경작지의 순환하는 내부 길을 유지해야 한다.

교통 도로, 특히 교통 구역, 보관 및 환승 구역, 대기 장소, 주차장은 그에 따라 크기가 다음과 조정되어야 한다:

- 차량 및 기계의 폭
- 물건 운반 및 들어올리는 물건의 복잡성
- 교통 상태

구역 및 교육에 사용하는 길은 복잡하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

도로 표면은 튼튼하고 적합하며 매끄럽고 움푹 들어간 곳이 없어야 하며 너무 가파른 경사가 없어야 한다. 교통 및 보안법에 따른 표지판은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고 간결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

- 필요한 작업 장비 및 도구

- 칼과 같은 모든 종류의 날카로운 물건은 보호를 위해 잘 관리해야 한다.

제4항 (처리 및 변형 작업을 위한 공장)

- 화학성 위험

농장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고용주가 만든 구성이 잘 되어있고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 본관 장소나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통과 같은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그 장소들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장비들이 있어야 한다.

-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있는 유리 용기, 면으로 만든 봉투는 근로자가 위험 물질 또는 성분의 이름과 원리를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사용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 노동 감독관은 사용된 제품 유형에 대해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주에게 비상 청소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처리 및 변형 작업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성분들이 하수 탱크로의 유출, 누출 또는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학 물질 또는 화학 성분의 사용으로 근로자가 위험 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는 각 화학 성분에 대한 보안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 보안 라벨은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식별 정보
- 물리적, 화학적 및 독성 특성
- 보관, 사용, 취급 또는 혼합, 파기 또는 폐기시 주의 사항
- 사고 전 예방 조치

고용주는 직업전담 의사 감독관에게 이 보안 라벨을 제출해야 한다.

제5항 (기계적 위험)

기계, 송신기 및 장비는 안전하고 적절한 상태로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한다.

- 기계 및 송신기의 휴대용 장비
모터, 실린더는 근로자 손에 닿지 않게 멀리 보관해야 한다.
- 기계의 구성요소 중 분리가 가능한 휴대용 부품은 보호도구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작업장의 다른 부분을 통과하는 벨트 또는 케이블의 경우 높이는 지상에서 최소 2m 이상이어야 한다.
- 직원이 사용하는 기계 또는 보조 장비는 작동 중인 벨트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모든 유형의 자동 연삭 기계는 기계가 움직이는 장비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호, 제어 또는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정상적인 작동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간단한 프레스 기계 또는 보호 장치를 수리할 경우, 기계를 정지시켰을 때 기계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작업 시 클러치, 프로펠러 및 구리선(작은 운하) 작업이 기계에 방해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6항 (전기 설비)

모든 전기 설비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감전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전기 설비는 고장으로 이어지는 손상 위험에 비한 기계적 내구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과열이나 절연체 또는 근처에 있는 다른 물체를 위험에 발생하지 않고 전류가 정상적으로 통과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전기 설치 전문 직원이 전기 기술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전기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추가 설치, 조정 또는 수리는 설치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7항 (건물 설치)

작업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를 위한 임시 공간을 제공하는 건물은 일반적으로 사용 중량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바닥

은 단단하고 융기, 구멍 또는 위험한 경사가 없어야 하며 표면이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 벽과 천장은 작업 활동에 적합하고 청소하기 쉬워야 한다.
- 장비와 시설 사이의 최소 폭은 0.8m 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은 교량 또는 평평하게 정리된 교량 및 이러한 장소에 대한 접근 수단을 건설, 설치 또는 보호해야 한다.
- 근로자를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건물과 근로자를 위한 임시 공간은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유지하고 관리되고 위험이 없어야 한다.
- 작업장의 조명, 작업자를 위한 예비 공간 및 관련 장소는 빛 및 조명에 관한 2003년 12월 23일자 에 시행한 공포(Prakas) 484 S.K.B.Y의 조항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 작업장의 환기 및 청소 장비는 환기 및 대기 청소에 관한 2001년 6월 15일자에 실행한 공포(Prakas) 123 S.K.B.Y의 규정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 근로자를 위한 의자는 작업장에서의 의자 설치에 관한 2000년 2월 10일자에 실행한 공포 (Prakas) 053 S.K.B.Y의 규정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제8항(위생)

- 화장실 및 욕실

위생적 화장실 설치에 관한 2000년 2월 10일자에 실행한 공포(Prakas) 052 S.K.B.Y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 개인 서랍 및 의복 보관 장소

고용주는 각 근로자에게 별도의 서랍을 제공해야 한다.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나 음식을 제외하고 모든 서랍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 내부 규정은 전체 지시, 사용 및 유지, 관리 제공과 관련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옷을 보관할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보관 공간은 작업장과 분리되어야 하며 넓고 통풍이 잘되어야 한다. 의류 보관 장소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로 별도 배치되어야 한다. 보관 장소에서 보관된 옷은 건조 상태여야 한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작업복 또는 보호 복은 얼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의류와 멀리 있어야 한다.

- 식당

직장에서 식사는 금지되어 있다. 고용주는 필요한 요구 사항에 따라 식당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이 식당의 건설은 노동직업훈련부의 근로자를 위한 사회 서비스에 관한 공포(Prakas)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에게 위생적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위생적 음료 제공에 관한 2000년 2월 10일자에 실행한 공포(Prakas)054 S.K.B.Y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9항 (생계의 조건)

- 물

각 마을은 식량 분배 구역에서 적절한 위생적인 물을 제공해야 한다. 물 분배 시설은 유출, 유입,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직접, 간접 저장의 위험으로부터 준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물을 분배하는 장소는 좋은 위생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튜브를 사용해야 한다.

- 수질 및 물 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관리 작업은 고용주의 책임이다.

고용주는 근로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관할 당국에서 발행한 수질 분석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수질 분석은 가능한 한 자주 수행해야 한다.

- 마을이나 마을 근처에 벌레의 서식처가 될 만한 웅덩이 물이 있는 지역은 제거해야 한다.

집 근처에 웅덩이 물이 있는 경우 주민들이 직접 물을 제거해야 한다.

- 고용주는 공공 장소와 집단 장소에 있는 웅덩이 물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보육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각 마을의 보육 시설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이 시설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다닐 수 있도록 마을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보육원의 위치는 넓고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자연광을 받을 수 있고 외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는 모기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 바닥과 벽은 쉽게 청소할 수 있고 소독할 수 있어야합니다. 보육원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보육원을 확인해야 한다:
 - 위생적인 물
 -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조리할 때 필요한 도구 또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구
 - 적절한 가구
 - 취침에 필요한 수단
 - 아이들 나이 또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음식
 - 대체 가능한 물건 및 청소 도구
 - 놀이기구, 성장을 위한 장비, 교육을 위한 장비

고용주는 근로자의 자녀로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의 전문성 있는 사람을 현장이나 학교에 제공하고 부모님들이 일하는 데에서 아이들이 같이 있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제10항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는 2000년 12월 6일자 시행한 공동 공포(Prakas) 330 S.K.B.Y의 노동법과 기업 병원의 기능에 관한 규정과 2001년 6월 28일자에 시행한 공동 공포 (Prakas) 139 S.K.B.Y의 규정과 같이 기업의료 서비스의 조건과 사명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제11항 (청소년 및 여성 근로자에 관한 공포(Prakas))

18세 미만의 남녀 청소년은 공장, 처리장 및 변형 작업을 위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15세 미만의 여성과 청소년의 물체를 들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15일자에 시행한 공포(Prakas) 124S.K.B.Y의 수동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2항 (행정 서비스)

행정 서비스 직원의 위생 및 보안 문제는 노동법의 기타 공포 및 실행 조치에 관한 조항을 따라야 한다.

제13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

을 받는다.

제 14 항: 이 Prakas 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Vong Sauth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썩 안 부총리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부 기관
- 행정 및 재무 재무 기관
- 지방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및 캄보디아 상업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왕국
국가 종교 국왕

노동직업훈련부
제307호

2007년 12월 14일, 프놈펜

의류·신발 공장의 산업위생·안전 조건에 관한 부령
Prakas on Conditions of Occupational Hygiene and Safety in Garment and
Shoe Factories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 캄보디아왕국의 헌법을 참조하고
- 캄보디아 왕립정부의 지명에 관한 2004년 7월 15일 자 왕실령 제 NS/RKT/0704/124호를 참조하고
- 각료회의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는 1994년 7월 20일 자 왕실법률 제 02/NS/94호를 참조하고
- 노동법을 공포하는 1997년 3월 13일 자 왕실법률 제ChS/RKM/0397/01호를 참조하고
- 노동직업훈련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는 2005년 1월 17일 자 왕실법률 제 NS/RKM/0105/003호를 참조하고
- 노동직업훈련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2005년 4월 1일 자 총리령 제52호 OrNKR/BK를 참조하고
- 노동직업훈련부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노동직업훈련부(MOLVT)가 제정한 기타 부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제1조에서 다루는 모든 의류·신발 공장/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자의 산업위생·안전 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작업장·작업현장 환경)

고용주는 작업, 인원수 및 주위 환경에 적절한 작업장·작업현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작업장비 및 보호장비는 사용자 또는 인접한 동료 직원에게 장애 또는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고용주는 작업장을 작업 유형별로 분리하여 대기, 소음, 냄새 또는 분진으로 인한 장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고용주는 작업장 내 원재료, 생산라인 및 완제품을 적절히 배치하여 정돈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외피가 석면 함유 물질로 된 튜브로 연결되는 스팀 시스템이 설치된 작업장은 격리된 상태로 운영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3조(창고)

각 공장/사업장의 창고는 최소한 두 종류로 구분되어야 한다.

- 화약품 창고는 격리된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물리적 변화, 균열, 누출, 폭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원산지를 불문한 각 화학물질의 로마자 명칭을 해당 물질이 담긴 병 또는 캔에 임시로 표시해 두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각 화학물질에 대한 프랑스어 또는 영어 설명을 표시하여 담당 공무원이 필요 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생산자재 창고도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 시 즉각적인 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 가죽, 고무 또는 직물은 생산공정에서 사용하기 전에 냄새, 분진 또는 열기를 제거하기 위해 일정 시간 보관하여야 한다.
- 보건안전표지 및 창고 규정은 간결하게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적절히 게시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제4조(화학물질의 사용)

의류·신발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은 물질을 포함한다.

- 의류 공장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할로겐화탄화수소, 비환식 지방족 탄화수소, 에탄올, 아세트산염, 글리콜 등)
- 여하한 종류의 접착제 및 합성수지와 같이 신발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크롬염, PVC, 이소시아산염, 케톤, 에틸 아세트산염, 메틸 아크릴산염 등)

고용주는 근로자와 일반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직원들을 배치하기 전에 해당 직원들에게 화학물질의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훈련을 적절히 실시한다.
- 모든 화학물질은 다른 장소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격리된 구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배기(air pump-out) 시스템은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자가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한다.
- 비상구가 마련되어 있도록 한다.
- 보건안전표지 창고 규정은 간결하게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적절히 게시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제5조(근로자 대상 산업안전교육)

모든 의류·신발 기업/공장/공방 작업장의 고용주는 근로자 및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직무별 작업과 관련된 위생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의무가 있다.

* 해당 교육에서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 물리적 요인(열, 소음, 빛, 광선, 진동 등)으로 인한 위험성
- 화학물질, 생물학적 물질, 기계, 전기,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성
- 야간작업으로 인한 위험성
- 효과적인 예방조치
- 긴급상황 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취하여야 하는 행동

* 해당 교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되어야 한다.

- 고용 개시 시점
- 직무 전환 시
- 생산 기술 또는 기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원재료를 배치하는 경우
- 근로자가 장기휴가(1개월 초과)를 취한 후

*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전문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참여 중인 근로자는 정상시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작업복)

고용주는 각 근로자에게 매년 최소 두 벌의 작업복을 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첫 번째 작업복은 근로자가 고용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각각의 작업복은 최소 두 부분(상의 및 치마/바지)로 구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체에 맞는 크기이고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수선작업장, 화학물질에 노출된 구역 또는 공장 구내식당의 경우, 고용주는 여벌의 앞치마 또는 가운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작업복이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 등의 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부 규정에는 작업복의 할당, 사용 및 관리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제7조(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

15세 미만 연소자는 의류·신발 기업/공장/공방 작업장에서의 작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는 다음과 같은 위험작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수선작업장에서의 작업
-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
- 단추 부착, 절단, 샌드블라스팅, 교반(agitating) 및 건조 작업
- 페인트 분무, 염색 작업, 흐름생산(production flow) 구역에서의 작업 등

임신 약 3개월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은 가벼운 작업 및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작업만 허용된다.

제8조(보건서비스)

모든 의류·신발 기업/공장/공방 작업장의 고용주는 사내 진료소 설치에 관한 2000년 12월 6일 자 공동부령 제330호 및 사내 의사의 자격 조건 및 임무에 관한 2001년 6월 28일 자 공동부령 제139호²⁾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근로자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번역자 주] 파일마다 영어 명칭이 제각각이어서 'Guidelines' 파일의 '부록 11'과 '부록 12'에 수록된 두 법령의 내용을 참고해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제9조

이 부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노동법」 제16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는다.

제10조

이 부령은 아래에 기재된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장관

(서명 및 직인)

Vong Sauth

수신처:

- 왕궁부
- 상원 사무처
- 국회 사무처
- 총리 비서실
- 부총리 비서실
- 모든 관계 부처 “참고용”
- 노동국
- 행정재무국
- 시·주청 노동직업훈련과 “배포 및 실행용”
- 캄보디아 기업경제인연합회(CAMFEBA) “실행용”
- 노동조합총연맹 “참고용”
- 라디오·TV 방송국 “배포 지원용”
- 기록보존소

부령 제307호 별첨

2007년 12월 14일

용어 설명

한국어	영어/프랑스어	설명
산업위생	industrial hygiene / hygiène industrielle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빛, 소음, 분진, 진동 등의 수준
석면 함유 물질	asbestos / amiante	방열재 및 방화재 등으로 사용되는 비가연성 혼합 화학물질
창고	warehouse / magasin de stokage	상품 창고
직사광선	direct sunlight / rayon direct du soleil	정면에서 곧게 비치는 햇빛
안전보건표지	health and safety sign / signalisation desanté et de Sécurité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안내·지시 사항을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나타낸 표시
위험성	risk / riskques	위험(danger) 또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진동	vibration / vibration	흔들림
앞치마	apron / tablier	작업복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몸 앞부분에 두르는 치마
가운	gown / blouse	작업복 위에 덧입는 헐렁하고 긴 옷
흐름생산	production flow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일련의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방식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노동직업훈련부

No: 308.....K.B/Br.K

프놈펜, 200..년 12월 14일

Sre Ambel 기업에서의 근무 조건 및 생활 조건에 관한 공포(Prakas)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 캄보디아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0704/124, 2004 년 07 월 15 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02/N.S/94, 1994년 7월 20 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설립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105/003, 2005 년 01 월 17 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실행 및 기능 입안에 관한 시행령 52 R.N.Kr/B.K , 2005 년 04 월 01 일자 참조
- 인도를 위한 음식의 위생에 관한 시행령 47 R.NKr/B.K , 2003 년 06 월 12 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의 필요에 의거함

2.

결 정

제 1 항: 노동법 제 1 조에 적용된 범위 내에서 모든 Sre Ambel 수공기업의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과 생활의 존엄성과 적절한 위생을 위한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2 항: (작업복)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복 2 벌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첫번째 작업복은 근로자가 첫 입사한 날로부터 15 일에 제공해야 한다. 각 작업복 한 벌은 적어도 하의 치마 또는 바지 및 상의 옷을 모든 근로자의 몸에 또한 작업환경에 맞게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고용주는 세제와 같은 의복을 세탁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내부 규정은 의복을 사용, 유지하는 조건을 규정 할 수 있다.

제 3 항: (개인 보호장비 및 작업 장비)

고용주는 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고무장화, 고무장갑 또는 헬멧과 같은 개인 보호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스크레이퍼, 막대기, 로프, 팽이, 갈퀴 등과 같은 작업 장비는 내구성이 있어야하며 사용자에게 어려움이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4 항: (위생 음료)

Sre Ambel 기업의 고용주는 위생 음료 제공에 관한 2000 년 02 월 10 일에 공포 054 S.K.B.Y 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위생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항: (노동으로 무거운 물건을 이동)

노동으로 무거운 물건을 이동은, 특히 여성과 18 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2001 년 06 월 15 일에 시행한 공포 124 S.K.B.Y 호에 따라 수행되어 한다.

제 6 항: (근로자 및 가족의 생계)

근로자가 개인이든 가족이든 관계없이 염전 부지에 거주하게되는 경우 고용주는 다른 곳에 가족이 없는 근로자와 가족이 있는 각각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 및 직업훈련부의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제공에 관한 공포에 따라야한다.

제 7 항: (여성 및 아동의 직업)

15 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를 돕기 위해 염전 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15 세 이상의 아동은 건강, 안전 및 도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만 할 수 있다. 임신 개월 이상인 여성의 경우 가벼운 작업만 허용된다.

제 8 항: (의료서비스)

Sre Ambel 수공예기업의 고용주는 기업 병원 설립에 관한 2000 년 12 월 6 일자에 공포된 공동 Praka No. 330 S.K.B.Y, 그리고 기업의 의료서비스의 업무에 관한 2001 년 6 월 28 일에 공포된 공동 Prakas No 139 S.K.B.Y 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항: 이 Prakas 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16 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제 10 항: 이 Prakas 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Vong Sauth**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쏭 안 부총리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부 기관
- 행정 및 재무 기관
- 지방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및 캄보디아 상업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노동직업훈련부

No: 309 K.B/Br.K

프놈펜, 2007년 12월 14일

벽돌제조회사에서의 작업과 생활 조건에 관한 공포(Prakas)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 캄보디아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0704/124, 2004 년 7 월 15 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02/N.S/94, 1994년 7월 20 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설립에 관한 법령을 사용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105/003, 2005 년 01 월 17 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 실행 및 기능 입안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52 R.N.Kr/B.K , 2005 년 04 월 01 일자 참조
- 노동직업훈련부의 필요에 의거함

결 정

제1항: 노동법 제1 항에 적용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벽돌수공예 기업의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조건과 품위 있고 위생적인 생활 수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벽돌 완성 전단계:

흙을 파고>기계에 놓기>말리기> 굽기.

벽돌제조작업장은 다음과 위험이 있다:

- 흙 파는 작업: 무거운 무게, 기생충으로 인해 위험함.
- 가마: 먼지 많고, 고열.
- 벽돌제조기계: 기계 벨트에 걸리면 팔, 다리를 절단할 수 있다.

제2항: (작업복)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복 2 벌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첫번째 작업복은 근로자가 첫 입사한 날로부터 15 일에 제공해야 한다. 각 작업복 한 벌은 적어도 하의 치마 또는 바지 및 상의 옷을 모든 근로자의 몸에 또한 작업환경에 맞게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고용주는 세제와 같은 의복을 세탁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 내부 규정은 의복을 사용, 유지하는 조건을 규정 할 수 있다.

제 3 항: (개인 보호장비 및 작업 장비)

고용주는 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신발, 장갑 또는 모자 같은 개인 보호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벽돌 또는 흙을 이동할 수 있는 수레, 팽이, 갈퀴 도끼 등과 같은 작업 장비는 내구성이 있어야하며 근로자에게 어려움이나 주변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벽돌을 만드는 기계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나 기계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근로자에게 안전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가 벽돌가마에서 작업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벽돌을 안팎으로 운반할 때 고용주는 벽돌가마를 정상온도 (7 도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제4항: (수동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 위생적으로 화장실 설치, 위생적으로 음료 제공)

모든 수공예벽돌 기업의 고용주들은 아래에 공포(Prakas)를 수행해야 한다:

- 수동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에 관한 공포(Prakas) 시행령 No124 S.K.B.Y 2001년 6월 15일자
- 위생적으로 화장실 설치에 관한 공포(Prakas) 시행령 No 052 S.K.B.Y 2001년 2월 10일자
- 위생적으로 음료제공에 관한 공포(Prakas) 시행령 No 054 S.K.B.Y 2001년 2월 10일자

제 5 항: (근로자 및 가족의 생계)

근로자가 개인이든 가족이든 관계없이 수공예벽돌 기업의 부지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고용주는 다른 곳에 가족이 없는 근로자와 가족이 있는 각각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 및 직업훈련부의 노동자를 위한 숙소를 제공에 관한 공포에 따라야한다.

제 6 항: (여성 및 아동의 직업)

15 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를 돕기 위해 수공예벽돌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 15 세 이상 18 세 미만의 아동은 위험한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땀감 작업, 흙 작업, 벽돌을 만드는 기계실에서의 작업 등의 작업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임신 3 개월 이상인 여성의 경우 가벼운 작업만 허용된다.

제 7 항 (의료서비스)

벽돌수공예기업의 고용주는 기업 병원 설립에 관한 2000 년 12 월 6 일자에 공포된 공동 Praka 시행령 No. 330 S.K.B.Y, 그리고 기업의 의료서비스의 업무에 관한 2001 년 6 월 28 일에 공포된 공동 Prakas 시행령 No 139 S.K.B.Y 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항: 이 Prakas 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16 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제 9 항: 이 Prakas 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장관:

Vong Sauth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쏭 안 부총리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부 기관
- 행정 및 재무 기관
- 지방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및 캄보디아 상업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맥주공장 참고 사항:

쓰레기는 3 가지로 나뉜다:

- 유리 쓰레기
- 플라스틱 쓰레기
- 일반쓰레기

수행업무 4 가지:

고위험: 공장 (신발 공장, 의류공장), 수공업 (유리제조)

빛 3 가지:

- 자연적: 태양
- 인공적
- 자연적 + 인공적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보건부

No: **330** S.K.B.Y

프놈펜, 2000년 12월 6일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및 보건부의

기업의 의무실 설립에 관한 공동 공포 (Prakas)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장관

보건부 고위급 장관

- 캄보디아 왕실의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1198-72, 1998년 11월 30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699/06, 1999년 6월 17일자 참조
- 보건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196/06, 1996년 1월 24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87 R.N.Kr/B.K, 1999년 10월 4일자 참조
- 보건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67 R.N.Kr/B.K, 1997년 10월 22일자 참조

결 정

제1항: 노동법 제1항에 명시된 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및 회사의 고용주는 기업 내에 반드시 영구 의무실을 설립해야 한다. 영구 의무실은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의 직업 전담의사 기관 밑에 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영구 의무실은 위치와 크기, 보건 종사자의 수와 품질, 그리고 의료 장비와 의약품의 조전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2항: (위치 및 크기)

의무실은 작업장 근처에 있어야 하며 환자가 출입하기 쉽고 빛이 충분하고 환기가 잘되어야 하며 시끄러운 소음 장소, 쓰레기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먼지, 연기, 냄새 등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가 갖춰져야 하지만 적어도 20m 이상은 되어야 한다.

제3항: (보건 종사자의 수 및 효율성)

보건 종사자의 수와 효율성은 아래 표와 같이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기업 내 근로자 수	간호사 수	전담 의사 수	전담 의사 담당하는 최소 8시간/번
50-300명	1명 담당	전문의사 1명 또는 중간급 의사 1명	2 시간
301-600명	1명 담당	전문 의사 1명	2 시간
601-900명	2명 담당	전문 의사 1명	3 시간
901-1400명	2명 담당	전문 의사 1명	4 시간
1401-2000명	2명 담당	전문 의사 1명	6 시간
2000명 이상	3명 담당	전문 의사 1명	8 시간

기업이 잔업 근무할 때 의무실의 직원은 잔업 근무기간 동안 간호사와 의사가 이 시간에 당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제4항: (의료 장비와 의약품)

최소한 있어야 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다:

- 업무 책상 1개
- 리클라이닝 의자 3개
- 서류 상자 1개
- 의약품 배치 상자 1개
- 매트리스와 매트 있는 침대 2개
- 방부제 1개

이 공포 (Prakas)의 부록에 명시된 바 의료 장비와 의약품은 항상 있어야 한다.

제5항: 근로자가 200명 이상의 기업 또는 회사일 경우 의무실 근처에 부상자와 환자를 위한 병상이 최대 20개까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최대 근로자 수의 2%의 비율로 제공 가능해야 한다.

제6항: 근로자가 50명 이상의 기업 또는 회사가 지점이 있거나 작업장이 하나 또는 많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 작업장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 고용주는 주 작업장에 의료진, 의료 시설 건설, 붕대, 의약품과 같이 근로자의 구조 및 치료 수단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지점 또는 다른 작업장에게도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

제7항: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기업 또는 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구급함 1개와 의료 담당자 1명 있어야 한다.
- 근로자가 20명에서 49명인 부상 진료실 1개와 간호사 1명 있어야 한다.
- 이 공포 (Prakas)의 부록에 명시된 바 가구 및 의료 장비와 의약품은 항상 있어야 한다.

제8항: 이 Prakas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법 16장에 명시된 바 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다.

제9항: 이 Prakas는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행된다.

고위급 장관

장관

Doctor, Hong Sunhout

ITH

SAMHENG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장관협의회의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모든 지방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

캄보디아 왕국
국가 종교 왕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No: **484** S.K.B.Y

프놈펜, 2003년 12월

23일

빛 및 조명에 관한 공포 (Prakas)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장관

- 캄보디아 왕실의 헌법을 참조
- 캄보디아 정부 임명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T/1198-72,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장관 협의회 조직 및 기능 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02/N.S/94, 1994년 7월 20일자 참조
- 노동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CH.S/R.K.M/0397/01, 1997년 3월 13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법 시행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N.S/R.K.M/0699/06, 1999년 6월 17일자 참조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 설립 및 기능에 관한 왕실법 시행령 87 R.N.Kr/B.K, 1999년 10월 4일자 참조

결 정

제1항: 노동법 제1항에 명시된 바 기업 및 회사의 고용주는 작업장, 건물 내에서 작업하기 위해 적합한 자연광과 인공 조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자가 잘 볼 수 있고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명은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조명된다. 기술 용어는 이 공포(Prakas) 부록에 설명되어 있다.

제2항: 집중 또는 세심한 작업에서는 근로자가 피로하지 않도록 조명을 제공하고, 근로

이후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 작업장에 비추는 조명은 주변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
- 단 하나의 작업장 일반 조명은 작업장 조명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조명은 좋은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눈이 색상을 잘 볼 수 있어야 하며 작업 활동에 적합해야 한다.
- 근로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밝은 조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깜빡이는 조명은 제거해야 한다.
- 작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받지 말아야 한다.

제3항: 작업장에서의 조명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동 및 창고 시설	조명 평균 수준 (Lux)
이동통로	100-150
계단	150
물품 창고	150
창고	100

근로자 사용 시설	조명 평균 수준 (Lux)
식당	200
작업복실	100
화장실-욕실	100
의무실	500

식품 분야	조명 평균 수준 (Lux)
청소 및 통을 채우는 작업	200
포장 및 선별 작업	200
캔 및 병에 채우는 작업	500
잔 및 병에 내용 확인 작업	500
상품 확인 작업	500
색상 확인 작업	1000

담배 분야	조명 평균 수준 (Lux)
건조 작업	200
선별 작업	1000
담배 생산 작업	500

목재 분야	조명 평균 수준 (Lux)
목재 가공 작업	100
증기 구덩이에서 작업	150
목공(절단 작업 등) 작업	500
갈기, 채색 작업 등	500
선별 작업	750
품질 확인	750
유리, 그릇, 크리스탈(수정) 분야	조명 평균 수준 (Lux)
건조 작업	100
기계 관찰 작업	300
색 입히기, 평면 연삭, 평판 작업	750
수동으로 갈기, 조각 작업	750

그림 디자인	750
크리스탈 제조	1500

화학분야	조명 평균 수준 (Lux)
연삭, 혼합	300
평면 연삭, 공기 기계	500
타이어 제조	500
제어실	500
시험실	500
색상확인	1000

전기 장비 제조 분야	조명 평균 수준 (Lux)
케이블 및 전선 제조	300
큰 코일 감싸 작업	300
중간 코일 감싸 작업	500
작은 코일 감싸 작업	750
코일 페인팅 작업	300
양철 작업	300
대.중.소 장비 조립 작업	300-500-750
전기 작업장	1500

출판 분야	조명 평균 수준 (Lux)
종이 절단, 페인팅, 형판 제작	500
타자 배열 작업	500
혼합 조립, 조정	1000
기호 및 글자 작업	1000
색상 확인	1500
책 제본	500

직물 분야	조명 평균 수준 (Lux)
실크 작업	500
실크 선별 작업	500
직조, 자수 작업	750
색채 제작	500
건조실	100
자동화 형판 작업	500
색상 확인	1000

의류 봉제 분야	조명 평균 수준 (Lux)
자수 작업, 자수 라인 작업	750
전달 형판 조립, 절단 작업	750
변발 작업	1500
재봉 작업	1000
다림질 작업	300
마지막 작업 확인	1000

보석 제조 분야	조명 평균 수준 (Lux)
석탄 변형 작업	1500
보석 제작, 조립 작업	1000
손목시계 제조, 조립 작업	1500

호텔, 식당 분야	조명 평균 수준 (Lux)
안내, 출납, 숙박	300
주방	500
부엌, 식당	200
복도	100

행정 건물, 사무실	조명 평균 수준 (Lux)
물품 정리, 보관	300
적성, 타이핑, 독서, 통계 조사 공간	500
컴퓨터실	500
산업분야 설계실	1000
회의실	500
접대실	300
자료실	200

서점, 창고, 일반 판매소	조명 평균 수준 (Lux)
판매소	300
출납소	300
포장소	500

제4항: 고용주는 근로자가 조명 나오는 데서 방출되는 열로 인해 방해를 받거나 해당 열이 나오는 데에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이 어두워도 조명을 켜고 닫는 위치는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조명은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정리(전선, 램프 홀더, 전구)를 해야 한다.

제5항: 발전기는 근로자가 시끄러운 소음이나 공해를 피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장이나 기타 건물에서 멀리 있어야 한다.

제6항: 고용주는 정전을 대비해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조명을 준비해야 한다. 이 교체 조명은 적어도 5Lux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장관

ITH SAMHENG

수령 기관:

- 왕궁 사역부

- 상원 사무국
- 국회 사무국
- 총리실
- 장관협의회실
- 모든 관련 사역부 "통보하기 위해"
- 사회 노동직업훈련 및 청소년 재활부의 행정국 및 재무국
-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모든 지방 노동직업훈련부 기관 "이행 및 공지하기 위해"
- 고용주 협회 "이행하기 위해"
- 노동조합 "통보하기 위해"
- 모든 라디오 및 TV 네트워크 "보급 지원"
- 기록 및 공문서